대구광역시달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-26호

청렴감사실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
최종합격(예정)자 공고 및 임용관련 서류제출 안내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(예정)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7일
대구광역시달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최종 합격(예정)자

임용분야	임용예정 직급	응시번호
청렴감사실장	지방행정사무관	2026-14-05

2. 채용관련 서류제출 안내

가. 제출서류

①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부
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④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
※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('26.6.16.) 개정에 따라 마약류 검사 추가
⑤ 본인의 기본증명서 1부 <상세,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>

나. 제출기한: 2026. 11. 24.(화)까지

다. 제출방법: 달서구청 총무과 인사교육팀에 직접 제출

3. 유의사항

가.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임용자격요건 조회, 신원조회 등을 거쳐 2027년 1월 임용될 예정입니다.
※ 임용자격요건 관련 경력조회, 신원조회,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

☎ 문의: 달서구청 총무과 인사교육팀(053-667-2232)

[별지 제4호서식]

임용후보자등록원서(원본)

③ 응시연도	년도
※응시번호	지구 번
※직 급 별	급 직

※등록번호	제 회 번
※ 급	직

① 성명	(한글)	② 생년월일	※ 등록심사	
	(한문)		사진대조	서류심사
	(영문)		㊞	㊞

④ 주소		(사진부착)
⑤ 연락처	전화번호 :	
	휴 대 폰 :	
⑥ 병역	○ 병역필 / ○ 면제 / ○ 미필 / ○ 여성	

⑦ 학력

부터	까지	학력	전공・부문・과목

⑧ 자격면허		⑨ 상벌	
연 월 일	종별	연 월 일	사항

⑩ 경력

부터	까지	경력사항	발령청

(※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)

⑪ 비상연락처

관계	성명	연락처	비고

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,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,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.

년 월 일

출원자 (인)

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

참고: 위의 ※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Ⅰ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1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(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)

가. 수집 및 이용 목적

○ 지방공무원 임용등록, 인사업무 및 급여업무에 활용

나. 수집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메일, 전화번호, 학력, 자격·면허 소지사항

다.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
라. 수집근거: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【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 】

2.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(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)

가. 수집 및 이용목적

○ 지방공무원 임용등록, 인사업무 및 급여업무에 활용

나. 수집항목: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등

다.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동의일로부터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

라. 수집근거: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【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 】

Ⅱ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

○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귀하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등록 및 급여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 :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대구광역시달서구청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결격·범죄 유무조회(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)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
1	결격사유 유무정보
2	범죄경력(유무) 조회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■주민등록□여권 □외국인등록 □운전면허) 번호:)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[별지 제7호 서식]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				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
⑥ 검사 시	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㎝		체 중	㎏	
허리둘레	㎝	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 ) 우: ( 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 ) 우: ( )

종 양 질 환		이비인후질환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
근골격계 질환		안 질 환	
정 신 질 환		흉부X선 검사	
기 타			

마약류 검사

필로폰		대마		케타민		엑스터시		코카인		아편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 ]합 격 [ 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(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걸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
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판정보류"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
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- 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   다.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"양성" 또는 "음성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
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
   -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지 않음
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  (예시: "만성골수성백혈병"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
  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
  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
※ 응시자의 질환이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
4. 검사 내용 중 "마약류 검사" 항목만 제외하거나,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5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